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석주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49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5년 5월 11일

발 의 자 : 이석주 의원

찬 성 자 : 성중기, 이해경, 진두생,
김현기, 최호정, 이윤희,
서영진, 유동균, 유용,
남창진, 우미경, 이명희,
황준환, 박성숙, 유청,
김동율, 오봉수,
김광수(노원), 박기열,
이현찬, 도문열, 최조웅,
이승로, 조상호, 김제리,
이숙자, 이성희 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가 어려워 평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, 2014.5.20.일 제정된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,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“발달장애인”, “보호자”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.
- 다. 시장은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 지원하고 재활 및 발달지원 등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라.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후견인 선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를 위하여 「민법」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,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정책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마.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를 위하여 신청자에 대하여 개별지원계획 수립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하고, 의사능력이 충분하지 않고 보호자가 없는 발달장애인의 계좌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, 발달장애인 평생교육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·운영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- 바.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개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 또는 구에 설치 운영하도록 함(안 제8조).

사.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·복지지원·위탁 등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9조).

아. 시장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제7조제4항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발달장애인”이란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
2. “보호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3호의 보호자(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)

나.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

다.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

라.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(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)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법령 등과의 관계)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
2.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고 영유아를 둔 분모에 대하여 지원하는 계획
3.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발달지원 연구·조사·시행 계획
4.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계획
5.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홍보 계획
6.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 계획
7. 시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정책수립 계획
8.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
9.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계획
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

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권리보장)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.

1. 법 제9조에 따라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「민법」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가.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
나.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다.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

2.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.

제7조(복지지원 및 서비스)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.

② 개인별지원계획은 시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.

③ 발달장애인에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할 사람(이하 "계좌관리인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2조제2호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보호자와 계좌관리인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의거 그 계좌 관리를 점검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
 2.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,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·운영
 3.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
 4.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활동
 5.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·주간활동·돌봄 지원
 6.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, 전문 심리상담 지원
 7.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
 8. 법 제33조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·운영
 9.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⑥ 제5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(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)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,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 또는 구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(보호자를 포함한다)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
 2.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
 3.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
 4.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
 5.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 사회 홍보
 6.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
 7.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
 8.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
 9.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
-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법 제34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, 사회복지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역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)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7조에 따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

3. 제10조에 따른 시가 지원하는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0조(위탁) ①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지정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이나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, 의료기관,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조례안 제7조제5항에서 “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
- 조례안 제8조에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·운영, 제9조에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설치·운영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대상
 - 평생교육(제7조제5항제3호) 지원 비용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(제8조) 설치·운영 비용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(제9조) 설치·운영 비용
 -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특성상 명시적 재정지원이 곤란한 사업이나 현 시점에서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사업, 타법률 등에 근거하여 기 시행 중인 사업이나 유사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 지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

추계대상 제외 사유	추계대상 제외 사업
정책특성상 명시적 재정지원이 곤란한 사업	제7조제5항제1호의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-현재 타 장애인협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,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만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곤란
현 시점에서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사업	제7조제5항제2호의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·운영
타법률 등에 따라 기 시행 중 사업	제7조제5항제2호의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
유사프로그램 운영으로 추가 지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	제7조제5항제4호의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제7조제5항제5호의 거주시설·주간활동·돌봄지원 사업

○ 전제

- 추계기간 중 물가상승률 2.3% 반영(한국은행 2015~2016년 물가전망치 평균)
- 국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출 계속 발생

○ 기간: 시행일로부터 5년(2016~2020년)

○ 방법

- 서울시 사업계획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추계
- 추정식 = $\sum_{i=1}^5$ (평생교육+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·운영+지역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설치·운영) $_i$
- i =비용추계 연차(2016~2020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 비용: 17,871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(2016년)	(2017년)	(2018년)	(2019년)	(2020년)	
세입	수입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평생교육(제7조제5항제3호)	1,428	2,191	3,736	3,822	3,910	15,087
	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 치·운영(제8조)	518	530	542	555	567	2,712
	지역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설치·운영(제9조)	14.4	14.4	14.4	14.4	14.4	14.4
	소계(b)	1,960	2,736	4,293	4,391	4,492	17,871
□ 총 비용(b-a)		1,960	2,736	4,293	4,391	4,492	17,871

4. 덧붙이는 의견: 없음

5. 작성자: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여차민 정책조사팀장(전화 3702-1418)

II. 추계 상세내역

1. 추계 대상 및 방법

- 대상
 - 조례시행에 따른 평생교육지원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치·운영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설치·운영 등에 따른 비용
- 방법
 - 서울시 사업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대상사업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
 - 추계기간 중 물가상승률 2.3% 반영(한국은행 2015~2016년 물가전망 평균)
 - 국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

2. 추계상세

가. 평생교육(제7조제5항제3호) 지원비용: 15,087백만원

- 평생교육센터의 설치·운영에 따른 비용을 추계
- 추정과정 및 전제
 - 연간 평생교육센터 설치·운영비용 = 개소당예산액 × 개소수
 - 연간 물가상승률 2.3% 반영
 - 2016년 2017년은 각각 1개소 신규 설치, 2018년 2개소 신규 설치 가정, 2019년 이후 신규설치 없는 것으로 가정

(단위: 백만원)

	2016	2017	2018	2019	2020	계
개소당예산액	714	730	747	764	782	
개소수	2	3	5	5	5	
총비용	1,428	2,191	3,736	3,822	3,910	15,087

주: 2016년 개소당예산액과 연도별 개소수는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제출자료 적용

나.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·운영(제8조) 비용: 2,712백만원

- 추정과정 및 전제
 - 연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·운영비용 = 개소당예산액 × 개소수
 - 연간 물가상승률 2.3% 반영
 - 2016년 1개소 설치이후 신규설치 없는 것으로 가정

(단위: 백만원)

	2016	2017	2018	2019	2020	계
개소당예산액	518	530	542	555	567	
개소수	1	1	1	1	1	
총비용	518	530	542	555	567	2,712

주: 2016년 개소당예산액과 연도별 개소수는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제출자료 적용

다. 지역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설치·운영(제9조) 비용: 72백만원

○ 추정과정 및 전제

- 연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설치·운영비용 = 위원회수당(회의참석수당 + 심사수당) × 지급인원 × 연간회의수
- 서울시 「2015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」의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
- 추계기간 중 수당인상은 없는 것으로 가정

(단위: 백만원)

	2016	2017	2018	2019	2020	계
위원회수당(참석수당+심사수당)	0.2	0.2	0.2	0.2	0.2	
지급인원	6	6	6	6	6	
연간회의수	12	12	12	12	12	
총비용	14.4	14.4	14.4	14.4	14.4	72

주: 1. 참석수당 10만원, 심사수당 10만원 적용
2. 회의는 월1회 개최를 가정